

[별지 제54호서식]<신설 1998.3.21>

농·어 민 확 인 서				
성 명 (대표자명)		주민등록번호	-	
법 인 명		법인등록번호	-	
주 소				전화번호
사 업 현 황	소 재 지			
	업 종	농업() 축산업() 어업()	사업자등록번호	
	영농규모 사육규모 영어규모			
농업용·축산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 수입내역				
제 품 명	규 격	수 량	수입금액(천원)	비 고
합 계				
상기인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6조제10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농·어민임을 확인합니다. 년 월 일 신청자 (서명 또는 인) 농 업 축산업 협동조합장 [인] 수산업				
※ ①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2항제9호에 의하여 농업용·축산업용·어업용 기자재를 수입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농민·어민은 농·축산·임·어업용기자재에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자를 말합니다. ②농·어민확인서는 기자재의 수입신고서에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.				

22226-78611일

210mm×297mm

1998. 1. 26. 승인

(신문용지 54g/m²)